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8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3.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2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2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2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27.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2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5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5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5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5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5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5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5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5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5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5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5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5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5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2.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5
23.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5
2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5
2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5
2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5
27.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6
2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6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2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질의시간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윤광일, 전현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8일 현재까지 윤광일 후보자에 대해서 총 42개 기관에 985건, 전현정 후보자에 대해서 총 49개 기관에 1020건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3월 23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서면질의를 청문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청문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를 경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3월 25일 오전 9시까지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박한 일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6)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0)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1)
1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2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1)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23.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2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2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2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27.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2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15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8항까지 23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총 1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 조배숙 의원,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춘석 의원, 이성운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1소위에서 여야 간에 치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본 내용이다라는 말씀 첨언합니다.

다음으로 한기호·송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양수·송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민형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박은정 의원 외 3인이 소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형법 등에 따른 사기, 횡령, 자본시장,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되는 사이버범죄 등으로 개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사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적법성 또는 적절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와의 관계

조향을 삭제하여 수사의 독립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고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계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고동진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부분 유감을 표시한 부분 저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9대 범죄에서 예를 들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 왜곡죄도 추가되고, 수사관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들……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다, 본질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떡하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그래서 수사 개시를 하면 검사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사의 입건 요청권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공소청…… 수사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됐다.

예를 들면 행안부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부분 이것도 행안부 산하에 있는 부분이고요. 행안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권을 발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 직원의 수사관 겸임 문제도 조금 수정은 되었습니지만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하에 적격심사위원회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이 없다.

장관님, 행안부장관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우리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안부 장관 산하에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장관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휘·감독할 수 있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법안 상정 시 토론에서도 답변을 드렸다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중수청이 권력기관화되고 중수청장이 괴물 청장이 되면서 또 다른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님은 다르다고 보십니까? 행안부장관님은 중수청장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본적으로 장관은 설사 정치인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민 성격의 장관을 임명해 온 것이 행안부장관의 지금까지 사례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장관님,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하면서 제일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치검찰……

○**서범수 위원** 오히려 저는 이 중수청이 장관님 산하에서 장관님의 인사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사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치검찰이기 이전에 검찰 스스로가 권력집단화되고 정치권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관님이 중수청에 영향을 끼치면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중수청장은 괴물 중수청장이 될 수 있고 장관님은 괴물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전제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도 그렇지만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중수청이 독자적인 수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는 장관의 개별적인 사건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한테 개별적으로 지휘할 수 있잖아

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청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지금 까지 법무부장관이……

○**서범수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게 뭐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산하에 국수본이 있고 경찰청이 있고 중수청이 있는데 왜 접근 하는 방법이 다른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 민주화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6월 항쟁 이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오랜 개혁의 과정이 있었고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개혁의 과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경찰 개혁과 관련한 논의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중수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 수단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장관의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범수 위원** 오히려 행안부장관께서 권력기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지 않으면 오롯이 국민들한테 피해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통해서 권력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방탄수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지 않는 이상은 중수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재설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을 포함해서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중수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어떤 정치 탄압을 한다든가 편파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 법 체계 안에 그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도 가능하고 경쟁도 가능한 것이라서, 그리고 또 장관은 언제라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견제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권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십시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발언 준비해 주시고요.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법안1소위원장으로서 법안1소위에 참여해 주셨던 여야 위원님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쟁점이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3일에 걸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17개로 줄이고 또 마지막에는 5개, 사실상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표결에 간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안 소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몇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건영 위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중수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법보다 더 특별하거나 또는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이 감독하거나 과도하게 지휘가 부여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법에 있었던 것보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중수청을 설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서 최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나오게 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3일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충실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많은 부분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특히나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수청이 검사 조직으로부터 예측화되는 것 아니냐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45조를 완전히 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그래서 검사와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우려들은 해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중수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저는 이런 조직에 대해 힘을 실어 주는 게 당연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표명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똑같은 조항이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70년 넘는 검찰청 역사에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일상적인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제대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수청 직원들을 행안부장관 밑에 둘 수 있는 조항들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없었거든요. 보다 클리어하게 하자, 독립성을 부여하자고 해서 그런 조항들도 다 하나하나 들어냈단 말입니다. 저는 계속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헛갈려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 순서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3일간에 걸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도 치열한 토론과 논의 끝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견도 반영해서 최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건영 법안1소위 위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했었던 45조,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정부와 여당 위원님들도 매우 깊게 받아들여서 전체 삭제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의 시대가 열렸고 이 부분이 향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그 원칙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 대상에서 사이버범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있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기술력으로 전문성 있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애초에는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뜻깊은 진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 입법을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 진행 과정에서 논란도 피하지 않고 함께 심사를 해 오신 여야 모든 위원님께 특히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 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동안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하였던 것은 법조문화라는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행안부는 경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의 예로 봐서 이제까지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나 사건 지침을 내려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것 야당 위원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부적격심사위원회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수청은 제가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들의 DNA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통속인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인사나 그다음에 징계나 부적격심사 이런 것을 할 때 자기들 끼리 끼리의 DNA로 뭉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으로 행안부장관이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감독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에 있어서 상명하복 문화가 아예 법률적으로도 검사 등 일체라는 규정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인사권과 지휘권이 일치되어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수청장이 하위직 인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들의 또는 수사 조직들 사이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사실상 이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에게로 옮겨 놓게 된 것이다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인 제도장치 또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이후에 수정·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졸속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소 조금 미비하더라도,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실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먼저 여당이 되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이 똑같은 법안이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검찰개혁하자고 나왔으면 동의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성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제도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어느 시대든 제도는 그 시대에 맞게 완벽하게 해도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검찰도 이번에 검찰청 해체까지 오기까지 그 안에 들어 있던 조직원, 검찰들의 문제로 이렇게 파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수청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말 여야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며칠 동안 다듬은 이 제도가 잘되려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수청이 경찰청하고 다른 인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다 맡기면 되지, 영국처럼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왜 국수본 있는데, 국수본 조직을 강화해서 중대범죄를 그냥 맡기면 되지 따로 중대범죄 본부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중수청이라는 이런 대규모의 청을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기관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이달희 위원** 제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어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적 자원의 차별성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던 수사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이달희 위원** 법안소위에서 차관 보고 가운데서 검찰청이 한 1만 명쯤 있는데 공소청에 한 7000명쯤 같 것 같고 중수처에 한 3000명쯤 정도 생각한다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던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원이 검사 포함 검찰청에 1만 명이 좀 넘고요. 그중에 검사가 2000.....

○**이달희 위원** 그래서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동안 경찰청보다 좀 더 고도의 수사 능력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사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이나, 중수청에 이런 것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신분보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았는데 2년에 한 번씩 받고 그리고 그 하위가 되면 또 면직되는 심사까지 다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해 내면 이 조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해악이 가는,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채용자를 할 수 있는데 정당 경력 3년 이상 돼 있는 사람 하자고 아무리 해도 국수본부장과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도 다 있는 조항을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할 수 있는.....

행안부장관 여당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돌아오시면 여당 국회의원으로 오시고 다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 안 되고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떤 우수인재들이 와서 이 중수청의 이런 부분을 보장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국민이 체감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식이 있고 수사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 수사관들에 있어서는 중수청으로 와서도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질의 계속하고 해도 되겠지요?

○서범수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1개 법안을 3일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조목 조목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적어도 3일 동안 심사한 내용 중에 마지막까지 쟁점이 5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야당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한 법안이었고 또 국민적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심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1소위 위원으로서 나름 자부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주로 특례조항의 상당 부분이 단체장과 집행부가 주도하는 법이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강화라든가 주민 참여의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그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지방의회법이나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1인 이런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국회로 다시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법안이라 그래도 행안부에서 충분히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러니까 강원특별법이나 또 전북특별법처럼 특정 시·도에 한정해서 의회 권한을 넓히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일반적인 제도로써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자는 그런 의미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갖는 기우와 우려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특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될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희 위원 우려가 아니라 생략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서 좀 더, 그러니까 절차상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더라도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이광희 위원 보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 2개 법안을 보면서 그전에 대전충남 또 광주전남, 대구경북법안 심사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것 하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통합된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더군다나 충북 같은 경우는 아예 포함도 돼 있지 않아서 이런 특례가 진행이 된다면……

광주전남법 통과 이후에 이제 막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그러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완적 요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동감하셔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특별법을 다루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야당에서 행안부장관 산하에 인사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를 둔 것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인사위, 적격심사위에도 외부위원 한 3분의 1 정도를 둬으로써 내부통제도 두는 거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야당에서 말한 구체적 사건에 부당한 수사 지휘라는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행정조직 체계상, 정부조직법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체계상의 정합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국세청이나 병무청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외청에 대한 인사권의 큰 틀은, 특히 고위직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고위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대신 조치를 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청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직 그러니까 중수청 3급 이상 같은 경우도 장관님이 하시지만 4급 이하 실무직 같은 경우는 중수청장이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청장에게 위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야당에서 말씀하신 민주적 통제, 정치적 책임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특히 행안부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취득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채현일 위원 그럼으로써 수사기관의 일방통행 견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시스템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야당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하시고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해요?

양부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정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잘 훈련되고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국수본과의 관계정보다는 그립(grip)을 세게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또 하나는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 의견과는 많이 다르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 법안에 동의합니다.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그래서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둔 것입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아울러서 수사 범위에 대한 경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이에요. 국민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국민은 세 군

데 돌아 다니면서 수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법령을 보니까 처음 법령에 비해서 중대……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려면 통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수청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6대 범죄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수사권을 준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당연히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지를 통보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범위에 있어서 실무상 편의 때문에 특정한 범죄로, 대통령령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의미가 6대 범죄 중에서 몇 개의 범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6대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조항은 대안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어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오늘 법안소위 발표에는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통보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양부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안소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중대수사청이 우선지휘권을 갖고 우선요청권을 갖고, 우선요청권을 줄 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통보권을, 통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통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6대 범죄 중에서 일부 범죄의 종류로 한정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6대 범죄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갖고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6대 범죄 중에 일부는 좀 제외될 수도 있고요. 기준을 좀 제한해서 통보받는 범위를 정하겠단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범죄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양부남 위원 6대 범죄 중에서 어떤 범죄는 통보할 필요 없고 어떤 건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범죄 종류를 제외하겠다고 아니고요, 수사 범위로 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 어느 정도의 범죄를 통보해야 하는가를 정하겠단 이런 얘기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6대 범죄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가령 예를 들어서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국수분도 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협력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협력을 하겠으나 별도로 개별적으로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하고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6대 범죄, 통보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6대 범죄 중에서 일정한 범죄만 통보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6대 범죄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에 따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대성·심각성으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신정훈 정리하시지요.

○양부남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성·심각성도 굉장히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사문화될 수가 있고 중수청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고사당할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양부남 위원님 질의로 의문이 해소돼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장관님,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이 됩니까? 기존의 검사하고 중수청의 수사관하고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분보장은 기본적으로……

○서범수 위원 많이 약화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약화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현재의 직급과 정년……

○서범수 위원 그나마 그래도 검찰에서 검사가 신분보장이 돼 있으니 여태까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수사관은 검사보다 신분보장이 많이 약화돼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적격심사위원회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찰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매년 수사관 근평 2년 이하 최하위 또는 3년 평균 최하위 시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검사는 7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검사가 적격심사로 인해서 면직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성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대법원장 추천 법률 전문가 1명, 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 행안부장관 위촉 전문가 1명, 행안부장관 지명 수사관 2명, 6명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거기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부적격으로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안부장관 지명 수사관 2명, 행안부장관 위촉 전문가 1명,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은 장관님이 컨트롤 가능하시겠지요? 안 그러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교육부장관 추천자를 제가……

○**서범수 위원** 그래서 교육부장관과 같은 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교육부장관이지만 학자이지 않습니까?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격심사위원회가 제일 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장관님이 수사관을, 전체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소조항일 수 있다. 안 그러습니까?

제가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든 아니면 학계 또 변호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사 결과를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체가 편중돼 있다, 지금. 편중돼 있고 또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사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한테 지시를 하니, 안 하니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적격 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독자성,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간사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7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았던 검찰청 검사의 경우에 단 한 명도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말씀 또한 그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서범수 위원**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사문화된 것은 사문화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문화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가지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이 추천하는 수사관 2명은 중수청 내에 계속 근무하고 또 근무해 왔고 앞으로 할 분들입니다. 실제로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들이 적격심사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행안부장관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조직 특성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간사님께서 공직생활 하실 때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짚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추천 위원 2명을 1명으로 줄였고요 추천 수사관 4명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전 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28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정안의 제명부터 제2장 15조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발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견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제16조부터 제4장 제40조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장 제41조부터 제6장 제51조까지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부칙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견이 있었던 것을……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의결 전에 대안 제2조의 중대범죄에 국가나 지방보조금 비리수사와 담합에 대한 수사의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안에 대한 윤건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그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건영 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신정훈 예, 설명을 좀 하세요.

○윤건영 위원 중대범죄 주요 항목들을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비리수사와 경제범죄에 있어서 담합에 대한 수사의 내용도 중대범죄에 담아내자라는 내용이라서 아마 법안소위 하셨던 위원님들은 충분히 동의가 되실 걸로 봐져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찬성이 있으므로 대안의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 2조 중대범죄의 정의에 국가나 지방보조금 비리수사와 담합에 대한 수사 내용도 포함시키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반론과 이견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는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대안은 오랜 시간 국민께서 요구해 주신 그리고 요구해 온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뒤섞인 권력구조가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고 정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약속입니다.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완결된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멈추지 않았고 한걸음을 더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과 제도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권력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의결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면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선택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방금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7인,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국3특 체계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윤건영 제1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 중에 전북·강원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또 노력해 주신 지역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고동진 권철승 김성희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재관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출장 위원(1인)

모경중

○청가 위원(2인)

용혜인 위성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